



가족친화인증제도 소개



가족친화인증이란?

가족친화제도*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
*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, 탄력적 근무제도,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,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

* 법적 근거: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



가족친화인증 효과



기업 이미지
제고



인재 유치
이직률 감소



업무 몰입도 및
생산성 향상



인증 주체 및 신청 대상

인증주체	신청대상		
	신규인증(3년)	유효기간연장(2년)	재인증(3년)
여성가족부 장관	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·기관	신규 인증 기간 만료 전 (`23년 신규인증기업 및 기관)	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기간 만료 전 (`09년, `12년, `15년, `18년, `21년 신규인증기업 및 기관)



인증 기준

구분	신규인증	유효기간 연장	재인증
대기업·공공기관	70점	70점	75점
중소기업	60점	60점	65점
총계	100점 만점		
적용 기준	(공통) '최고경영층의 리더십'의 배점에서 5점 이상 획득		
	• 중소기업 총점 60점 이상 획득(가점 포함) • 대기업 등은 가족친화제도실행 배점에서 35점 이상 획득 및 총점 70점 이상 획득(가점포함)		• 중소기업 총점 65점 이상 획득 • 대기업 등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에서 35점 이상 획득 및 총점 75점 이상 획득(가점포함)

☎문의 : 061- 260- 7351



전남여성가족재단